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

임영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진상규명사업국장

민주주의 이행의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인 '과거청산'이 연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방 이후 친일반민족행위를 단죄하지 못한 채 그들의 세상이 되도록 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평가와 가치를 제대로 밝혀 역사를 바로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청산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권위주의 통치 아래 자행되었던 폭력적 공권력의 행사로 일어난 사건과 반민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는 권위주의 통치에 온몸을 바쳐 민주화를 쟁취하다가 희생되고 산화해 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아울러 그 숭고한 정신에 맞는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는 반민주·인권 탄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온몸을 바쳐 지키고자 하였던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국가적 정신유산으로 만들고자 하는 민주묘역공원의 조성과 추모 공간 마련, 미래를 위한 국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000년 1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명예회복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가 발족하여 4년여 째 활동하고 있다. 보상심의회에서는 10,807건을 접수하여 2003년 12월 현재 8,000여 건을 심의·결정하였고, 심의된 사건 중 6,500여 건을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인정하였으며, 지난 3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인정받은 관련자들은 무엇이 명예회복된 것인지, 보상금의 문제 등 실제적인 것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한다.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우리 현대사의 '아픈 과거'도 치유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유가족들의 눈물겹고 지난한 투쟁의 결과물로 과거청산 입법의 모델로만 들어졌음에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아래에서 체계적인 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유가족 및 관련자, 관련 단체는 끊임없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 개정안마저 지난 16대 국회 마지막인 3월에 졸속으로 개정되면서 또다시 법의 형평성 문제와 법률 미비의 오점을 남겼다.

법의 형평성 문제와 법률 미비의 오점

이에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는



대상자 확대 문제, 합리적인 보상 문제, 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민주화명예회복법의 2차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제 수혜적 의미로 호도되는 민주화명예회복법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이하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공자 대상에는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와 '국가의 민주발전 및 사회정의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가 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03년 현재 이 조항에 의하여 국가 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나라 보훈 체계에서 국가 유공자는 50~60년대에는 전몰군경 및 상이군경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60년대 이후에는 독립유공자 및 4·19 희생자, 재일학도의용군으로 확대되었고 아웅산 사건

을 계기로 특별공로자 등이 추가되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반민주적인 세력과 제도에 맞서 투쟁한 결과이며, 이는 어두웠던 군부독재 시절뿐만 아니라,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민주적 절차의 개선 활동은 지속되어야 하며, 이 과정 또한 사회민주화운동의 한

과정이다. 특히 정권의 주체가 바뀌어도 이전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과 권력 행사의 피해자는 다수가 그대로 남아서 고통과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하기에 아직 우리 사회의 전 영역이 '민주적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대립과 갈등을 씻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공유하는 가치관의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며,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보훈 이념을 확대하고 정립하는 것은 그 일환일 것이다.

민주유공자법은 1998년부터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민족민주유공자법'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민주화명예회복법과 의문사진상규명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2000년 12월 이훈평 의원 외 103인 국회의원이 '민주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발의하여 추진하다가 보상 심의위의 심의 지연 등의 이유로 민주화명예회복법 대상자를 제외하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한정하여, 2001년 12월 21일 국회에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수정·가결되어, 2002년 1월 26일에 공포되었다.

계승연대는 지난 6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화명예회복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을 대표로 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발의하여 추진 중이며, 법률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안 이유

1961년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발생한 각 분야의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과 학생의 참여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켰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기에 정부는 민주화운동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등의 보상을 위하여 관련 법을 제정하였으나 일시적인 보상에 한할 뿐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광주민주화항쟁의 경우와 같이 유신독재반대투쟁, 6월 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하여 민주화운동 정신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 정의의 실현과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골자

- 법 적용대상자를 민주화명예회복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와 30일 이상 구금되었거나 6개월 이상 수

배, 해직 또는 취업거부, 여권발급 거부를 당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 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한다.

-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 이 법에 의한 예우 받을 권리의 소멸사유를 정한다.

-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대부, 양로 지원, 양육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실시한다.

-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추모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과 국립묘지를 설치한다.

-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예우를 정지하는 등 예우정지를 할 수 있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한다.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

민주화명예회복법에 의한 보상과 명예회복, 민주유공자로 지정되는 일은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정 과정이며 이후 진상규명과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한 활동의 단초가 마련되는 것이며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인 것이다.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할 때 이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가 존중되고,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한발 다가설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